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정관

2013. 6. 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법인은 독립운동과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준비하는 정책네트워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의 발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정책 등을 조사·연구하고, 그에 부수되는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하 ‘법인’ 이라 한다) 이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Policy Network Tomorrow(PNT)’ 라 정한다.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 및 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조사
2.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 사업의 수행 또는 위탁
3. 연구 및 조사 성과의 출판과 판매, 홍보, 교육 및 자문
4. 국내·외 관련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5. 기타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사원 및 회원

제5조(사원 및 회원의 자격)

- ① 사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제2항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이

다.

- ② 사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사원 5인 이상의 서면 추천을 거쳐 사원 가입 의사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회원은 법인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 ④ 사원과 회원의 가입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사원 및 회원의 권리)

- ① 사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사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법인의 연구성과를 담은 자료 및 출판물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교육프로그램 및 유료 프로그램 등에 할인혜택 등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7조(사원 및 회원의 의무)

사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납부

제8조(사원 및 회원의 탈퇴와 징계)

- ① 사원 및 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서면, 또는 법인이 지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법인에 탈퇴의사를 제출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 ② 사원 또는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제7조 중 어느 하나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기로 한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사원 및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출연금, 회비, 기타 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타 사원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연구소장 1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1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장과 연구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에서 후임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단독으로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 집행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연구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연구 및 집행기구를 총괄, 운영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을 현저하게 위배한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현저하게 방해한 행위
4. 기타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지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사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 소집시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서면, 홈페이지 공지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모든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사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각 사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사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사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연간 사업기본계획의 승인
5.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법인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재산목록의 작성 검토,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연구 집행기구

제27조(연구 및 집행기구의 설치)

- ① 법인의 연구사업 집행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연구소장 산하에 연구 및 집행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 및 집행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 까지 공개한다.

제30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수 익 사 업

제34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5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6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 해산시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 개최 후 본 정관제정 안건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법인 설립시 최초의 사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사원 참가 의사를 창립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로 한다.
- ② 법인 설립 후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③ 법인 설립 후 최초의 회계연도는 정관 시행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